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완화하며,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그 밖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을 추가하여 일반직공무원 응시요건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가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가산하고 있고, 그 사유에 음주운전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나.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7조제2항)

다.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7조제6항 신설)

마.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 확대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안 제47조의2제5항)

바.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완화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완화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제53조제5항)

사.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와 지방 분산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현행 재판연구원에 대한 인사 발령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의 위임 관련 수임자의 고등법원장 란에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을 추가함(안 별표 3)

아.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 추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자격증, 2호)의 응시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응시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의 응시요건에 ‘기능장’을 추가함(안 별표 5의5)

자. 그 밖의 제도 정비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8항 신설, 제47조의2제9항)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을 “음주운전, 성폭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하여야 하며”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을 “40”으로 한다.

제47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9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

2항 단서”를 “제2항 단서,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별표 3 중 “고등법원장”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수 입 자	위 입 사 항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p>(3)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p> <p>(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다만,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p> <p>(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3)의 전보권 및 위 (4)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6)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p> <p>(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p>

별표 5의5 제1호 전문임기제의 나급의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 임용 제한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p> <p>1. (략)</p> <p>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u>성폭력</u>, <u>성희롱</u> 및 <u>성매매</u>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가. ~ 다.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② ~ ⑦ (생 략)</p>	<p>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음주운전, 성폭력</u>----- ----- -----</p> <p style="margin-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 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② <u>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u></p>	<p>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 ----- -----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u></p>

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3호·제6호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제47조2(근속승진임용) ①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47조2(근속승진임용) ① -----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⑥ ~ ⑦ (생략)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②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40 -----

-----.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2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이상 생략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통	생략
	고등법원장	(3) ~ (6) 생략
이하 생략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현행 제③항과 같음)

⑤ -----

제2항 단서, 제3항-----

-----.

⑥ (현행 제⑤항과 같음)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이상 생략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통	현행과 같음
	고등법원장	(3)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
이하 생략		

별표 5의5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 기준

종류	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생략)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 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생략)
	라급	(생략)
	마급	(생략)
한시 임기제	5호	(생략)
	6호	(생략)
	7호	(생략)
	8호	(생략)
	9호	(생략)

※ 비교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5의5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 기준

종류	채용 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현행과 같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 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현행과 같음)
	라급	(현행과 같음)
	마급	(현행과 같음)
한시 임기제	5호	(현행과 같음)
	6호	(현행과 같음)
	7호	(현행과 같음)
	8호	(현행과 같음)
	9호	(현행과 같음)

※ 비교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